

영주어문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주어문학회(瀛洲語文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연구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국어국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관지 「영주어문」 간행
2.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국어국문학 분야를 전공하는 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 사: 20명 내외
4. 감 사: 2명

제6조(이사) 이사는 연구이사(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지역이사(제주,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사업이사(기획, 총무, 출판, 섭외, 홍보)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회 주요 업무의 의사 결정과 실무에 참여한다.

단, 총무이사는 회무 및 회원관리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원의 선임, 예산·결산의 심의 및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2001. 3. 22)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